



제 135 호
2018년7월18일(수)

여수시보

시정지표

- | | |
|---------|---------|
| 1. 시민공감 | 1. 감동시정 |
| 1. 균형있는 | 1. 동생경제 |
| 1. 사람중심 | 1. 상생문화 |
| 1. 품격있는 | 1. 나눔관광 |
| 1. 살기좋은 | 1. 정주환경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여수시 고시 제2018-233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승인 고시(남면 두라리 선가대 설치사업) /3

【공 고】

○여수시 공고 제2018-1654호 여수시 관문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시송달 공고 /4

○여수시 공고 제2018-1659호 도로 지정(변경) 공고[소호동 926 외 1필지] /6

○여수시 공고 제2018-1663호 2019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공고 /7

회 람								
--------	--	--	--	--	--	--	--	--

여수시 관문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

여수시 고시 제2018-39호(2018. 2. 8.)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후 여수시 관문동 978-1번지 일원에 여수시 관문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보상대상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구비하여 보상협의 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18.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여수시 관문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사업
- 위 치: 여수시 관문동 978번지 일원
- 사 업 규 모: 1,180㎡
- 사업시행자: 골드종합건설(주)
- 사 업 기 간: 2016. 8.12. ~ 2019. 8.31

2. 공고내용

- 협의기간: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 협의방법: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
- 협의장소: 골드종합건설(주) 현장사무소(여수시 관문동 681-3번지 DC마트 2층)
-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보상시기
 - 보상금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보상금은 현금으로서 지정계좌로 일시불 지급
 - 보상시기: 협의기간 내
-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초)본 2통, 인감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3. 공고기간: 2018. 7.18. ~ 2018. 8. 1.(14일간)

4. 기타사항

-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은자(토지주 및 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같음함.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사동) 골드클래스 빌딩 5층(골드종합건설(주)) (010-3735-41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공시송달 대상자

○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현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	여수시 관문동	711-2 (711-2)	도 (도)	7	7	이관술	등) 전남 여수시 공화동 1226 송) 전남 여수시 공화동 1226	이영남			상속 대상자	사망
								이영복			상속 대상자	
	이영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6길 41, 101동 802호 (방배동, 방배롯데캐슬로제)		상속 대상자								
	이영자			상속 대상자								
	이영미			상속 대상자								
	이영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9길 40-5 (미아동)		상속 대상자								
2	여수시 관문동	748-1 (748)	대 (대)	1	1*(1/2)	김혜자	등)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2-9 송)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68 평화맨션아파트 2-201				반송	
3	여수시 관문동	748-1 (748)	대 (대)	1	1*(1/2)	김희봉	등)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2-9 송)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 2길 11, 106동 301호 (신월동,코아루아파트)	김혜자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68 평화맨션아파트 2-201		상속 대상자	사망
								김봉기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2-9		상속 대상자	
								김형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6길 10-13, 202호 (대조동)		상속 대상자	
								김혜숙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278, 121동 501호 (광천동, 광천 e편한세상)		상속 대상자	
								김혜신	광주광역시 북구 탁영로 33, 102동 1105호 (두암동, 중흥에스-클래스)		상속 대상자	
								김문중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2-9		상속 대상자	
								김혜영	광주광역시 북구 탁영로 33, 101동 902호 (두암동, 중흥에스-클래스)		상속 대상자	
								김방석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2-9		상속 대상자	
								삼성 세무서			압류	
								여수시			압류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소호동 926번지 외 1필지 상 건축허가[2018-허가민원과-신축허가-54호]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 · 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구분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당초	계		128.0m	-	622.0m ²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변경	계		128.0m	-	611.0m²		
당초	소호동	995	-	-	29.0m ²	2017년 제5회 여수시건축위원회 심의 (도로지정 심의 소호동 995 외 5필지, 434m ²)	
당초	“	976	-	-	180m ²		
당초	“	977	-	-	23m ²		
당초	“	978	-	-	26m ²		
당초	“	산102-4	-	-	4m ²		
당초	“	산102-2	-	-	172m ²		
당초	“	926-5	-	-	107m ²		도로지정 동의서 첨부
당초	“	926	-	-	81m ²		
변경			-	-	70m²		
이 하 빈 칸							

※ 도로지정공고(당초) : 제2018-439호(2018. 2. 20.)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18.

여 수 시 장

2019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공고

여수시 공고 제 2018-1663호

아름다운 숲을 후대에 물려주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19년 주민·단체 참여숲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규모

- 사업명 : 2019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 신청규모 : 개소당 1백만원 ~ 5억원 내외 (도비 50%, 시비 50%)

□ 신청자격 : 5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비영리단체

□ 대상사업 및 대상지

- 소득숲 : 밀원숲, 특용수 숲, 견과류 숲 등
- 경관숲 : 마을숲, 담장녹화, 하천숲, 풍치숲, 골목길·상가 주변 숲
마을회관·노인정·터미널·농공·산업단지 주변 경관숲
- 대상지 : 농공·산업단지, 터미널 및 기차역, 마을회관, 노인정,
취약계층 생활지역, 마을 빈땅, 나들목, 유희지, 기존 숲
보완 등(국·공유지 및 공공 성격을 갖는 사유지)

□ 지원범위

- 5인 이상 주민 모임 : 1백만원 ~ 5백만원 이내
- 단 체 : 5백만원 ~ 5억원 내외
- ※ 주민·단체는 묘목·장비를 지원 받아 숲을 조성·관리,
행정에서 계약 및 기반조성 지원

□ **공모기간** : 2018. 7. ~ 8. 10.

□ **응모절차**

- ① 사업계획 작성(주민, 청년회, 봉사회, 임업단체, 마을대표자 등)
- ② 접 수(여수시 산림과 8. 10.(금) 18:00한)
- ③ 시 심사(숲속의 전남 시군 협의회 서류·현장심사 선정 8. 13. ~ 8. 17.)
- ④ 도 심사 및 대상지 확정(8. 20. ~ 9월)

□ **공모제한**

-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 사업추진 단체의 자체행사, 이윤추구, 시설투자, 회원 확보가 주목적이거나 회원 위주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단체(개인)

□ **기 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여수시 산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659-4640, FAX 061-659-5851)

2018. 7.

여 수 시 장

「숲속의 전남」 만들기
'19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추진계획



전라남도

JeollaNamdo

(산림산업과

)

「숲속의 전남」 만들기

'19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추진계획

주민·단체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숲을 조성·관리함으로써
「숲속의 전남」 만들기 도민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

I 기본방향

- (사업추진 개선) 사업범위 확대, 사업대상지 규제 완화
 - (사업범위 확대) 소규모 단순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 대표숲 조성
현행) 소규모 경관숲 → 개선) 권역단위 마을가꾸기, 노후공원 재생사업 등
 - (사업비편중 조정)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율 상향 조정
현행) 식재비55%이상, 시설물15%이하 → 개선) 식재비 45%이상, 시설물 25%이하
 - (사업대상지 완화) 공공 성격을 갖는 대상지로, 5년이상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 민간소유 토지(마을소유 등) 포함
- (대상지역)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비 생활주변 우선 선정
 - 농공·산업단지, 터미널·기차역, 취약계층 생활지역, 자투리땅 및 관광지·주요 관문로 주변 나들목 등
- (심사기준) 자부담 반영, 사후관리 참여 의지,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
 - 자부담 반영 주민·단체 우선 선정으로 스스로 조성·관리하는 분위기유도
 - ※ 지금까지 추진실적(개소, 억원) : 15년)39/16 → 16년)85/40 → 17년)107/40 → 18년)91/40

II 조사개요

- 사업규모** : 4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 '19년도 전라남도의회 예산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 조사기간** : 2018. 7. ~ 8. 10.
- 신청자격** : 5인 이상의 주민모임, 비영리단체
 - ※ 권역 단위 마을가꾸기 사업의 경우 3개 이상의 단체 참여

□ **대 상 지** : 국·공유지 및 공공 성격을 갖는 사유지^{*신규}로, 5년이상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 민간소유 토지(마을소유 등) 포함

※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및 민원 발생 우려지 등은 제외

□ **사업내용** : 권역단위 마을가꾸기^{*신규}, 노후공원 재생사업^{*신규}, 경관숲(관광숲), 하천숲 등

구 분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용
경 관 숲	· 마을 가꾸기	진입로, 빈터, 축사주변 등 교목류, 화목류, 관목류 복층 식재 (섬가꾸기 포함)	개소별 1~100백만원 내외
	· 권역 단위 마을가꾸기 (신규)	일단의 권역(골목길, 마을 입구, 버스승강장, 자투리땅 등)의 대상지에 숲 조성	개소별 100~500백만원 내외
	· 경관숲 관광숲	해수욕장, 관광지·주요관문·공단주변 및 국·공유 자투리땅, 교목류 위주 식재	개소별 10~100백만원 내외
	· 하천숲	하천주변 유휴부지 *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을 맞게 적용	개소별 10~100백만원 내외
	· 노후공원 재생사업 (신규)	공원, 도시숲, 녹지 및 노거수 주변 등 노후화된 공원 리모델링 추진	개소별 10~100백만원 내외
소득숲		밀원숲, 특용수 숲, 견과류 숲 등	개소별 1~100백만원 내외

□ **지원금액 및 방법**

- 5인 이상 주민 모임 : 1백만원 ~ 5백만원 이내
- 단 체 : 5백만원 ~ 5억원 내외
- 지원방법 : 주민·단체는 묘목·장비를 지원 받아 숲을 조성·관리, 행정에서 계약 및 기반조성 지원

□ 조사절차

① 접수 (7. ~ 8. 10.)	② 시군 심사 (8. 13. ~ 8. 17.)	③ 도 심사 (8. 20.~8. 31.)
주민 단체→사군 사무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 협의회사무국 · 자체심사· 선정 · 사군 → 도 제출 (8. 21.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속의 전남」 협의회 · 2차 심사 · 시군 조정 확정 (도)

□ 조사제외

-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 사업추진 단체의 자체행사, 이윤추구, 시설투자, 회원 확보가 주목적이거나 회원 위주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단체(개인) 등

Ⅲ 심사·선정

□ 심사절차 및 기준·우선순위

- 기 간 : 8. 13.~ 8. 31. (시군 8. 13. ~ 8. 17. / 도 8. 20. ~ 8. 31.)
- 심사절차 : (1차) 「숲속의 전남」 시군 협의회 서류·현장심사 선정
(2차)사업설명회 및 「숲속의 전남」 협의회 검토·조정
- 선정절차 : 참여 주민·단체의 사업계획 설명 →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 「숲속의 전남」 협의회 위원 다면평가 후 사업비 검토·조정
- 심사기준
 - 민간단체(주민) 참여 의지·건실성 : 인원, 자력 수목식재계획 반영 등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조성규모, 이용성, 경관·환경등과 연계성 등
 - 사업비의 타당성·우수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식재 구성 타당성
 - 활용 및 유지관리 계획의 구체성 : 사후관리 의지, 계획의 구체성
- 우선순위
 - 숲 조성·관리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주민·단체
 - 미세먼지 및 폭염 등 기후변화 대비 농공·산단단지, 생활권 주변 우선 선정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 및 교부액 결정 : 「숲속의 전남」 협의회 심의·결정
- 지원사업 통보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V 유의사항

- 사업제안서에 제안한 단체의 직인 날인과 법인·단체의 등록·신고·허가증이 첨부되어야 유효
 - * 회원수, 최근 활동사항(2년 이내) 등 함께 제출
- 숲 조성지는 반드시 「○○(○○단체) ○○○숲 조성사업」 명칭 부여로 자공심 고취
- 응모 자격은 도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모임, 단체로서 대표자가 사업제안서를 시·군에 신청
 - * 5인 이상 주민모임, 마을대표자, 청년회, 봉사회, 여성단체, 직능단체, 임업단체, 사회단체 등
- 사업별 제안서 양식 및 증빙, 작성요령은 붙임 제안서 참고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지원 조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중도에 포기한 사업 발생시 차 순위 사업자를 선정하여 도 변경 승인 * 시군 협의회 주관
-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 신청자로부터 제안사업에 대한 설명 가능
- 사업제안 단체는 사업 후 사후관리("숲 돌보미") 의무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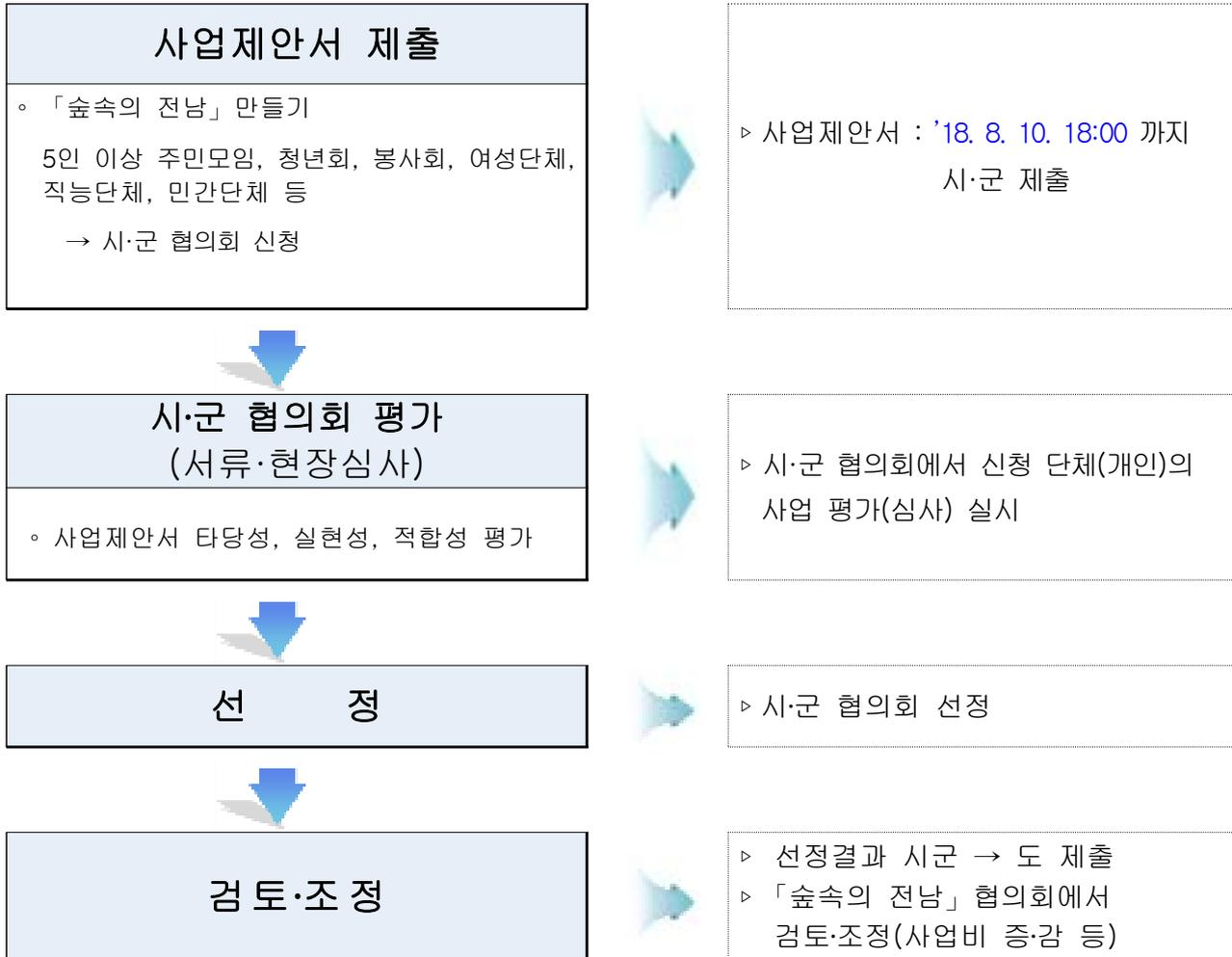
V 행정사항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시·군 접수 : '18. 8. 10. 한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시·군 협의회 심사 : '18. 8. 17. 한
- 심사결과 제출 (시·군 → 도 보고) : '18. 8. 20. 한
- 사업대상지 도 협의회 검토·조정 : '18. 8. 31. 한
- '19년 주민단체 참여숲 사업 대상지 확정 및 예산편성 : '18. 9월 ~

- 붙임 1. 조사 및 선정절차 흐름도 1부.
2. 사업 평가기준 (안) 1부.

- 참고 1. 2019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제안서 1부.
2. 2019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제안 요약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숲 돌보미 협약서 1부.

조사 및 선정절차 흐름도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군 사무국에서는 **사업 참여자 사전 제안서 작성 후 7월중 홍보하여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 신청 결과는 **'18. 8. 21.까지** 도 산림산업과 제출바랍니다.
- 시·군 사무국에서는 시·군 협의회를 행·재정적 지원하여 나무심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숲 평가기준(안)

'19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숲 신청 대상지 평가기준을 통해 대상지 우선순위 및 대상지를 선정·확정코자함

□ 평가개요

- 일 시 : '18. 8. 13. ~ 8. 31. / 시·군 8. 13. ~ 8. 17, 도 8. 20 ~8. 31.
- 대 상 지 : '18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숲 신청 대상지
- 평가내용 : 민간단체 참여의지, 파급효과, 접근성·개방성·이용성·사후관리 등
- 평가절차
 - 「숲속의 전남」 사군 실무협의회 선정 → 「숲속의 전남」 도 협의회 검토·조정

□ 평가방법

- “표준 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 실시
 - 민간단체 참여의지·건실성 20%, 활용 및 유지관리 계획의 구체성 20%
 - 사업내용 대비 사업비의 타당성·우수성 30%, 사업계획의 적합성 30%
 - 사업비 및 사후관리에 자부담 반영 단체 우선 선정
- 시·군 협의회 선정결과 대상지에 대하여 「숲속의 전남」 협의회 기술·교육 분과위원회 주관 검토·조정 후 사업지원 우선순위 결정
- 사업 대상지 선정
 -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반영하는 주민·단체 우선 선정
 - 평가결과에 의거 우선순위 순으로 지원

□ 조사 제외대상

- 정부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타 기관에서 지원 받는 사업
-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 사업추진 단체의 자체행사, 이윤추구, 시설투자, 회원확보가 주목적이거나 회원위주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 감사·수사기관 등 문제가 있었던 단체(개인) 고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숲 평가표 (안)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합 계	100	
1. 민간단체(주민) 참여 의지·건실성	20	구성 인원·수 사업의 이해도, 자부담 단체 성향 등
2. 사업계획의 적합성	30	
○ 조성 규모, 타 지원사업과 중복성	10	기 지원되는 사업인지 여부 사업 대상지 적합성
○ 조성대상지 접근성·이용성	10	숲 조성 후 이용자 등의 만족도·편리성이 높은지 정도
○ 경관·디자인·조경·환경 등과 연계성	10	사업내용이 주변경관과 어울리는지 정도
3. 사업내용 대비 사업비의 타당성·우수성	30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20	사업계획(식재수종, 대상지 등) 대비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식재비율 및 식재구성의 타당성	10	계절감을 살린 낙엽수와 상록수 조화 인공적 시설물의 지양
4. 활용 및 유지관리 계획의 구체성	20	
○ 사후관리 의지	10	숲 조성 후 유지·관리 의지, 협약체결
○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10	사후관리 인원, 시군 사무국 등과 협력체계 유지 등

* 시군 형편에 맞게 변경·조정 가능

평가 세부기준

	세부기준	배점	점수	비고
1. 민간단체(주민) 참여의지·건설성 (20점)	○ 구성 인원·수 - 100명 이상 : 10점 - 99 ~ 50명 : 7점 - 49명 이하 : 5점	5 3 2		
	○ 자부담 식재 계획(기증) 반영 - 반영 : 10점 - 미 반영 : 0점	10 0		
	○ 사업의 이해도(사업취지, 사후관리 등) - 상 - 중 - 하	5 3 2		
2. 사업계획의 적합성 (30점)	○ 조성 규모 - 1ha 이상 - 0.9 ~ 0.5ha 이상 - 0.4ha 이하	5 3 2		
	○ 숲 조성지와 이용자의 거리 - 1km 이내 - 1km 이상	5 3		
	○ 타 지원사업과 중복성 - 미중복 - 중복	5 0		
	○ 농공산업단지, 소외계층 생활지역 등 중점 추진지역 - 중점 추진지역 내 - 중점 추진지역 외	10 5		
	○ 경관·디자인·조경·환경 등과 연계성 - 상 - 중 - 하	5 3 2		
3. 사업내용 대비 사업비의 타당성·우수성 (30점)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수목식재비 80% 이상 - 수목식재비 79 ~ 56% - 수목식재비 55% 이하	20 15 10		
	○ 식재비율 및 식재구성의 타당성 - 교목 + 관목 식재 - 교목 위주 식재 - 관목 위주 식재	10 7 5		
4. 활용 및 유지 관리 계획의 구체성 (20점)	○ 사후관리 의지 및 사업이해도 - 마을기금 활용과 인력 참여 - 인력만 참여	10 5		
	○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 년 4회 이상 - 년 2~ 3회 - 1회 미만	10 7 5		

【붙임 1】

1. 2019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제안서

※ 주민모임, 민간단체(개인) 작성

단 체 명	예) ○○○단체, △△△단체, ◇◇◇ 단체 등			대 표 자	
제안사업명	예) ○○○ 숲 조성			참여인원	명
조성면적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천 원		사업지	신·구주소 병행 기재	
신청 자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이 동 전 화)	()
	E-mail			F A X	
	신청인	직위		성 명	
<p>위와 같이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제안함에 있어 정부의 정책 자금이나 타 지원기관의 중복지원을 받지 않으며 첨부 서류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안단체(기관)명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 font-weight: bold;">○○ 시장·군수 귀하</p>					
<p><첨부서류></p> <p>1. 제안요약서 ----- 1부</p> <p>2. 사업계획서 ----- 1부</p> <p>※ 제출된 서류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p>					

2. 2019년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제안 요약서

※ 민간단체(개인) 작성

사업명	예) ○○ (마을) ○○○ 숲 조성	사업장소	신·구주소 병기 기재																		
사업비 내역	<p>■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합 계</th> <th rowspan="2" style="width: 15%;">기반공사비</th> <th colspan="2" style="width: 20%;">식재사업비</th> <th rowspan="2" style="width: 15%;">시설물 공사비</th> <th rowspan="2" style="width: 10%;">기타</th> <th rowspan="2" style="width: 10%;">비고</th> </tr> <tr> <th style="width: 10%;">묘목대</th> <th style="width: 10%;">지주,비료등</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 style="color: blue;">파고라, 쉼터 등 (25%까지 가능)</td> <td style="color: blue;">안내판 수목표찰 등</td> <td></td> </tr> </tbody> </table>					합 계	기반공사비	식재사업비		시설물 공사비	기타	비고	묘목대	지주,비료등					파고라, 쉼터 등 (25%까지 가능)	안내판 수목표찰 등	
합 계	기반공사비	식재사업비		시설물 공사비	기타			비고													
		묘목대	지주,비료등																		
				파고라, 쉼터 등 (25%까지 가능)	안내판 수목표찰 등																
사업 개요	<p>■ 면 적 : 지 적 m², 조성면적 m² / 토지소유자</p> <p>■ 조성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소득숲(밀원단지, 견과류단지, 특용수단지 등), 하천숲, 풍치숲, 담장녹화, 담장허물기 등 ○ 골목길·상가 주변 숲, 마을회관·노인정·터미널·기차역·농공·산업단지 주변 경관숲 등 <p>■ 대상부지 : <i>현재용도(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i></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 공사 : 교목류 ○○그루, 관목 및 초화류 ○○본 식재 • 시설물 공사내역 : 파고라, 쉼터 등(사업비중 15→25%까지 가능)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 주요 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식재 및 공사 : • 사업 준공 : <p>■ 사업예정지 전경(사업계획서 조성부지 양식에 붙임)</p>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단체 참여 																				

【붙임 3】

3. 사업계획서

I. 사업계획

1. 사업배경

-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 사업장소 :
- 소요예산 :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백만원)	비율	비 고
기 반 공 사 비			
식 재 사 업 비			
시 설 공 사 비			
기 타			

- 조성유형 : 권역 단위 마을가꾸기, 마을가꾸기(담장녹화, 담장허물기 등 담장허물기, 담장녹화), 하천숲 경관숲 (관광숲), 마을 소득숲(밀원단지, 견과류단지, 특용수단지 등),

- 조성대상지 현재 상태 :

※ 현재용도 000 상태인데, 조성 후 숲 조성 적합여부 의견 기재

4. 세부사업내역

- 부지 현황

시·군/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5. 기대효과

-
-

6. 사업추진 세부내역

1) 조성사업

- 사업명 :
- 위치 :
- 조성면적 : m² (지적 : m²)
- 세부사업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율	비고
기반공사비	성도				
	자연석				
식재사업비	교목				
	관목				
	초화				
시설공사비	벤치				
	의자				
기타	안내판				
	수목표찰				

2) 조성위치

위치도	대상지 전경
위치설명	

7. 이용 및 관리계획 (향후 5년간)

1) 이용계획

-
-

2) 관리계획

- 숲 조성 관리횟수(가급적 4회 이상), 단체·마을 기금 활용 재료 구입 등
-

000숲 만들기 협약서

00단체와 00시·군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시행하는 000숲 조성·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단체 00시·군이 숲 조성·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 00단체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① 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경사업이나 인위적 시설물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자연에 가까운 숲으로 조성한다.
- ② 향토수종, 교목 중심으로 숲을 조성하되 관목·초화류를 적절히 보완한다.
- ③ 주변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여, 매력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 ④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결과보고 한다.
- ⑤ 시·군 실무협의회 지도·점검, 평가 시 지적사항 등에 대해, 즉시 관련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 ⑥ 사업계획서상 비용 외에는 추가 비용을 지원 할 수 없다.

제3조(사업지 사후관리) 숲 조성 후 그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사업시행 전 1회, 사업추진과정 중 1회, 사업종료 후 1회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소 2회 이상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 홍보 한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양 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에 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사업 완료되는 기간으로 하되 양측의 합의 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본 약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

제8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이 협약은 상호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 내용의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거나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9조(업무협의를) 양 기관은 본 협약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안별로 상호 업무협의를 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효력발생) ① 이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쌍방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000 단체(개인)

000 단체(개인)

시장 · 군수

0 0 0 (인)

0 0 0 (인)

0 0 0 (인)